

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5. 10. 14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620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복지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생활국장 : 이용달)

가. 제안이유

- 강남구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강남복지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강남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
-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필요성

-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

○ 주요사업

-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
- 사회복지시설간 연계 및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사업
- 재난 및 재해 긴급 구호지원 사업
- 연중 지정기탁 모금사업 등

○ 출연내용 :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지원

○ 출연금 : 917,807천원

- 인 건 비 : 665,295천원
- 운 영 비 : 252,512천원

☞ 「2026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 따라 2025년 발생 예정인 잉여금 177,000천원 (인건비 91,000천원, 운영비 86,000천원)을 2026년도 필요예산액에서 차감 편성

○ 강남복지재단 개요

- 이사장 : 이의신
- 설립일자 : 2014. 9. 19.
- 설립근거 :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설립)
- 소재지 : 강남구 봉은사로 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10층, 11층
- 조 직 : 3부(경영기획부, 복지사업부, 복지협력부)
- 인 원 : 정원 13명/ 현원 12명

다. 참고사항 (관계법령)

■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출연금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■ 2026년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

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감액 조정

□ 2026년도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6요구액	2025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917,807	1,060,647	△142,840	△13.5%
인건비	665,295	755,650	△90,355	△12.0%
급여	526,190	529,170	△2,980	△0.6%
연차수당	9,554	17,522	△7,968	△45.5%
초과근무수당	76,525	69,503	7,022	10.1%
명절수당	2,619	52,917	△50,298	△95.1%
가족수당	4,800	4,800	0	0.0%
장기근속수당	3,950	1,900	2,050	107.9%
자격증수당	4,320	4,320	0	0.0%
정액급식비	20,160	20,160	0	0.0%
퇴직연금 부담금	17,177	55,358	△38,181	△69.0%
운영비	252,512	304,997	△52,485	△17.2%
4대보험	4,816	2,652	2,164	81.6%
복리후생비	4,900	20,200	△15,300	△75.7%
직원 급량비	295	10,368	△10,073	△97.2%
여비	13,140	18,600	△5,460	△29.4%
직무수행경비	1,920	1,920	0	0.0%
공공요금 및 제세	22,142	23,197	△1,055	△4.5%
소모품비	3,540	7,112	△3,572	△50.2%
도서인쇄비	3,300	8,400	△5,100	△60.7%
지급임차료	2,400	16,200	△13,800	△85.2%
전산유지보수	28,840	8,500	20,340	239.3%
차량유지비	1,529	2,248	△719	△32.0%
보험료	1,440	1,700	△260	△15.3%
지급수수료	28,840	27,340	1,500	5.5%
업무추진비	30,000	30,000	0	0.0%
관서업무비	3,960	3,960	0	0.0%
교육훈련비	7,700	7,700	0	0.0%
회의운영비	27,250	23,400	3,850	16.5%
홍보비	25,000	32,000	△7,000	△21.9%
포상금	2,500	2,500	0	0.0%
자산취득비	39,000	57,000	△18,000	△31.6%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I. 동의안 제출 배경

- 본 건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강남구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남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[참고] 안건 철회 및 재제출 경위

- 2025. 9. 30. 강남구청장으로부터 “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(의안번호 제609호)”이 제출되었으나, 2025. 10. 1. 해당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고, 같은 날 본 건(의안번호 제620호)이 제출되어 2025. 10. 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의안번호 제609호 동의안(철회 건)과 의안번호 제620호 동의안(본 건)의 차이점은 출연 금액 변경(운영비 1,921,000원 증액*)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사유 설명 요구됨.

철회 건(의안번호 제609호)	본 건(의안번호 제620호)
출연금 : 915,886천원	출연금 : 917,807천원
- 인건비 : 665,295천원	- 인건비 : 665,295천원
- 운영비 : 250,591천원	- 운영비 : 252,512천원

* 운영비 금액 세부 변경 내역(1,921,000원 증액)

- 4대보험 3,895천원 → 4,816천원
- 복리후생비 3,900천원 → 4,900천원

- 먼저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.
- 본 건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
-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·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.
-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려는 출연금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제출 배경과 시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본 동의안의 의결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일 뿐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연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.

II. 강남복지재단 현황

- 강남복지재단은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설립되었음.
- 강남복지재단은 기부금 관리 및 확충, 저소득주민 지원사업,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III. 출연내용

- 2026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9억 1,780만 7천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△13.5%, △1억 4,284만원 감소한 것이며, 세부내역은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6억 6,529만 5천원과 운영비 2억 5,251만 2천원 임.

[2026년도 강남복지재단 출연금(안) 현황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6요구액	2025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계	917,807	1,060,647	△142,840	△13.5%
인건비	665,295	755,650	△90,355	△12.0%
운영비	252,512	304,997	△52,485	△17.2%

-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출연금 및 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[강남복지재단 출연금 및 잉여금 현황]

(단위 : 천원)

연도	잉여금+출연금	잉여금	출연금	집행액	집행잔액
2026(안)	1,094,807	177,000	917,807	-	-
2025	1,115,972	55,325	1,060,647	938,972	177,000
2024	1,005,251	97,564	907,687	949,926	55,325
2023	954,548	433,115	521,433	856,984	97,564
2022	1,330,504	375,118	955,386	897,389	433,115

(자료: 복지정책과)

- 행안부의 2026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출연기관의 잉여금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동의안에는 2025년 발생 예정인 잉여금 1억 7,700만원을 2026년도 필요예산액에 차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.
- 내년도 강남복지재단 출연금의 주요 감액 원인 중 하나는 8쪽의 출연금 및 잉여금 현황표에서도 알 수 있듯 전년보다 집행잔액(잉여금)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나 출연금의 구체적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부서 설명이 요구됨.
 - 참고로, 전산유지보수비가 28,840천원(전년 대비 20,340천원, 239.3%)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, 감편성 항목에서는 명절수당 2,619천원(전년 대비 △50,298천원 △95.1% 감소), 퇴직연금 부담금 17,177천원(전년 대비 △38,181천원, △69.0% 감소)순으로 감액 규모가 컸는바 항목별 출연금 편성 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IV. 종합의견

-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 내용이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를 위한 것이며, 본 동의안 의결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.

- 다만, 출연금의 경우 정산 및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집행 등에 대한 부서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, 향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. 끝.